

■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[별표 2] <개정 2005.11.23>

봉급조정수당지급 및 봉급산입방식

1.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

지급시기	지 급 액
11월	봉급월액(14호봉이상의 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 제1927호 부칙 제2조의 해당금액. 단, 동 규칙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관인 경우에는 동 규칙 부칙 제3조제2항의 해당금액)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

2. 봉급조정수당의 봉급산입방식 : 전년도 봉급액{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($1 + 9.32/12$)}